

계약사무처리규칙중 개정령

◎ 재무부령 제1,877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2년 3월 10일

재무부장관 인

◇개정이유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일반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예정까지 15억원미만에서 예정가격 20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과 예정금액 30억원이상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각종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함(제25조 제5호 및 제6호).
- 나. 일반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예정가격 15억원미만에서 예정가격 20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제31조).
- 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연장함(제72조).
- 라. 예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주요 시공내용을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제8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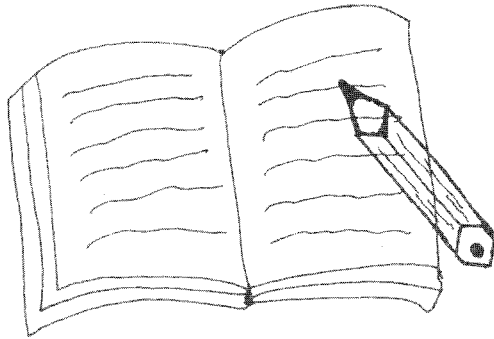
계약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제24조제5항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 및 위임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로 한다.

제25조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종전의 제5호)중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을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을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로 하고, 동조제8호(종전의 제7호)중 “제1호 내지 제6호외



에”를 “제1호 내지 제7호외에”로 한다.

5.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예정금액 30억원이상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중 “15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중 “동항 각호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거나 동항 각호내의 제한사항을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당해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당해계약상의 의무이행(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공사의 이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중 “하천등의 공사”를 “하천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의 공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일반건축”을 “일반건축(공동주택의 건축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공사시공기록의 작성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30억원이상의 신규 복합공종공사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시공중에 발생한 문제점등의 주요시공내용을 기록한 책자 5부를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보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자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자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는 즉시 5부중 4부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중앙관서의 장은 4부중 3부를 다시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